

제2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2019. 4.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

□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근거합니다. 의사상자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무 외의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상자법에 따라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기념사업,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2011년에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의사상자 조례”라 한다)를 제정하여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재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상자 조례 제정 당시부터 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상시설을 관장하는 해당 조례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은 조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 이에 의사상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인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 개별 조례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